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발명자의 특허권에 대한 보상금을 서울특별시 조례 등을 참고하여 현실적으로 인상함.

2. 주요골자

○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각각 인상하여 현실화 함. (안 제15조)

- 특허권 10만원 → 100만원 (90만원 인상)
- 실용신안권 5만원 → 50만원 (45만원 인상)
- 의장권 3만원 → 30만원 (27만원 인상)

3. 관련법규

○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5조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3. 의장권은 3만원	제15조(등록보상금)---------- ---------- ---------- .-------- 1. 특허권은 10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0만원 3. 의장권은 30만원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 및 자구정리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청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후 조건을 부가하여 신청자에게 발부하는 "교부지령서"를 "교부명령서"로 용어 정리 (안 제9조)

○ 구청장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 규정중 보고요구 조문을 명확히 함. (안 제15조)

3. 개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중 "교부지령서"를 "교부명령서"로 하고, "교부지령"을 "교부명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보고를 하거나"를 "보고를 하게 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부지령)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지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명령)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명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교부지령서----------	②전항의 교부명령서----------
③보조금 교부지령전에----------	③보조금 교부명령전에----------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위원회 운영의 능률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타 위원회와 균형이 유지 되도록 개편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었던 것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개정. (안 제3조 제2항)

○ 현행 민원중 건축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 함. (안 제3조 제3항)

3. 개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직능단체 인사와 건축전문가 등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여성계, 직능단체,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여성계, 직능단체 인사와 건축전문가 등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민원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있으므로, 건축과 관련된 민원만을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폐지

3.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 현실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에 능률성을 제고 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함. (안 제2조 제2항)

○ 위원의 직무 중 "회무를 통리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회무를 통할하며"로 자구 정정함. (안 제3조 제1항)

3. 개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제3조 제1항 중 "회무를 통리하며"를 "회무를 통할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 현실에 맞게 조례명을 개정하고 적용법규의 상이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수당등지급조례"로 함.

○ 근거법규인 지방공무원법 적용 규정을 『제7조 제4항』에서 『제7조 제6항』으로 하고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함. (안 제1조)

3. 관계법규 :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
※⑥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수당등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으로 하고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 :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조례명 :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수당등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5260호 97. 1.24)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 임시직·잡급직 경력도 공무원 유사경력으로 인정 되어, 자율방법원으로 근무한 지방방범원에 대한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무부 지침(지공 12510-18)에 의하여 지방방범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개정함.

2. 주요골자

○ 방범수당 중 자율방범경력 년수에 따라 가산 지급하였던 방범수당가산금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 제2항 및 별표3 삭제)

3. 관계법규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2(경력환산율표 개정. '97. 1.24)

○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내무부 지공 12510-18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별표3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방범수당) ① (생략)	제3조(방범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년수에 따라 〔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② (삭 제)
〔별표 3〕 방범수당가산금 지급 구분표 (이하 생략)	〔별표 3〕 (삭 제)

서울특별시서초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융자에 있어 융자대부 신청시 보증인 제도가 같은동 거주자로 제한하여 신청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것을 서초구 거주자로 확대, 완화함으로서 기금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신청자는 같은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하는 규정에서 서초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조건을 완화함. (안 제6조 제2항)

3. 개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같은 동에 거주하는"을 "서초구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자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체육진흥협의회에 있어 장의 명칭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각종 협의회의 통일적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함.

2. 주요골자

○ 협의회의 구성 중 『의장』을 『회장』으로, 『부의장』을 『부회장』으로 각각 변경하여 타 협의회 조례와 통일성을 기함.
(안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9조)

3. 개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중 "의장"을 "회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부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	②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 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 대표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①의장은 회무를---------- ----------.	제5조(회장의 직무)①회장은 회무를---------- ----------.
②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생략)	제6조(회의)① (생략)
②정기회의는----------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회장에게---------- ----------.
제7조(간사와 서기)① (생략)	제7조(간사와 서기)①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제9조(시행규칙)---------- -------- 의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회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대상을 규정한 근거법규인 예산회계법 123조 규정이 '95. 1. 5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 조항을 개정코자함.

2. 주요골자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대상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규정중 종전 제96조 규정에서 제123조 규정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 변경 (안 제2조 제3호)

3. 관련법규 : 예산회계법 제123조

제12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예산회계법 제12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예산회계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3. 예산회계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법령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던 본 조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이 '95. 8.11 전문개정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되어온 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폐지

3. 관련법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과태료) 제3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26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4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